

(参照)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1993. 8. 9.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3. 8. 3.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93. 8. 3.
- 다. 상정일자 : 제1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93. 8. 9)
- 9)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감사실장 문엽승)

- 가. 제안이유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한사항 및 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위원회는 위원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함 (안 제2조)
 - 법관, 교육자등 턱망있는 자 3인, 구의원 1인, 마포구 소속공무원 1인,
- 위원회는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를 처리함(안 제3조)
-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 연임할 수 있음(안 제4조)
- 위원회의 소집, 개의, 의결종족수를 정함(안 제6조)
- 위원회 간사임명 · 위원회경비지급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7조, 제8조)
- 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등을 준용함(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건재)

동조례(안)은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새로운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이 1993. 6. 11 법률 제4,566호로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의 공개를 제도화 함에 따라 당해 재산의 심사와 심사결과의 처리등을 담당할 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려는 재산등록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용을 하여야함과 동시에 특히,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의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윤리위원회가 공개후 3월 이내에 등록재산 심사시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보호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조사대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윤동현 위원) : 조례안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퇴직공직자는 무엇을 말하는가?
- 답변요지(문엽승 감사실장) : 재산등록한 공직자가 퇴직할 때에도 재산을 등록하여 그동안의 재산변동 사항을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퇴직공직자란 재산등록을 한 공직자가 퇴직하는 것을 말함.
- 질의요지(김유현 위원) : 윤리위원회 구성에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턱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고 했는데 마포구 관내 거주자만 해당되나?
- 답변요지(문엽승 감사실장) : 위촉기준에 그러한 사항은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227
----------	-----

제출년월일 : 1993.8.3.
제출자 : 마포구청장

제정이유

-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한사항 및 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위원회는 위원 5인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함(안 제2조)
- 법관. 교육자 등 덕망있는 자 3인, 구의원 1인, 소속공무원 1인
- 위원회는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를 처리함(안 제3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 연임할 수 있음(안 제4조)
- 위원회의 소집. 개의. 의결 정족수를 정함(안 제6조)
- 위원회 간사임명. 위원회경비지급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7조, 제8조)
- 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등을 준용함(안 제10조)

제정근거

- 공직자윤리법(1993. 6. 11 법률 제4566호)제9조, 제21조
- 공직자윤리법시행령(1993. 7. 12 대통령령 제13927호) 제16조~제23조
-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1993. 7. 12 총리령 제423호)

조례(안) : 별첨

- 예산조치필요성 : 위원의 수당등 예산 조치 필요

첨부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1부.
2. 제정근거 관계법령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2. 2인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원 1명과 서울특별시마포구 소속공무원(이하 ‘구소속공무원’이라 한다)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호선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인의 위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의(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1. 법 제8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 2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의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4.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5.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구의회 의원 및 구의회 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구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 제1항제1호의 규정의 의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의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 결의 요구

4. 법 제23조의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사무직원은 구소속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8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 윤리법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p>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p> <p>④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다.</p> <p>6. 서울특별시·직할시·도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서울특별시·직할시·도 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p> <p>제21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 및 운영등에관한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9조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p>		<p>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 3인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 한다.</p> <p>2. 2인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원 1명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이하 "구소속공무원"이라 한다)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제16조(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방법)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부위원</p>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p>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위하여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서울특별시·직할시·도 교육청에 각각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둔다.</p> <p>1.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p> <p>2. 제8조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p> <p>3.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p> <p>4. 기타 이 법 또는 다른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p> <p>② 각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관할은 다음과 같다</p> <p>5. 서울특별시·직할시·도 공직자 윤리 위원회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 소속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서울특별시·직할시·도 의회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p> <p>6. 시·군·구(자치구인 구에 한한다, 이와같다)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시·군·구 소속 공무원, 시·군·구 의회의원 및 의회 소속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p>	<p>장을 포함한 4인의 위원은 정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선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p>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p> <p>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 2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4.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5.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p>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구의회 의원 및 구의회 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p>제17조의(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p> <p>② 정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p>	<p>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② 구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구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p> <p>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p>
	<p>제18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p> <p>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p> <p>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1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p>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의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p>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p>④ 제3항의 규정의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p> <p>제20조(위원회의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간사 약간인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총무처소속 직원중에서 총무처장관이 임명한다.</p> <p>제21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22조(위원회의 운영규정)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p>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p> <p>제7조(위원회의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사무직원은 구소속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p> <p>제8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p> <p>제10조(준용)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법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p>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